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8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5172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임○○
피 고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전○○
변 론 종 결 2024. 7. 4.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8.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 6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B회사, 해외거래처 C회사 등(이하 '쟁점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에 있는 D유한공사(이하 'D'이라 한다)가 최종 생산한 니코틴(이하 '쟁점 니코틴'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전자담배 용액(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이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구 담배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청장은 2019. 7. 10.부터 2022. 5. 6.까지(조사중지 총 9회)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니코틴의 원료가 '연초의 잎'이고, 이 사건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2. 7. 8. 원고에게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 귀속 담배소비세 합계 4,551,456,260원 및 지방교육세 합계 1,750,514,3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8.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0.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



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만들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D 등은 ○○ 연초전매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연초의 줄기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니코틴을 정제·가공하여 쟁점 니코틴을 생산하였다. 따라서 쟁점 니코틴으로 제조한 이 사건 제품은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 6034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 10, 12,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 니코틴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수증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쟁점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이 사건 제품이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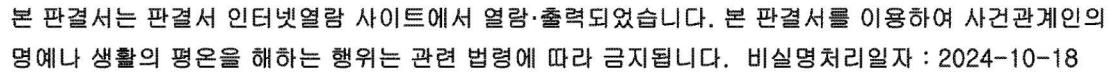


가) 원고는 E유한공사(이하 'E'이라 한다)가 연초의 대줄기를 이용하여 1차로 니코틴을 추출하고, D은 이를 정제·가공하여 순도 99.9%의 쟁점 니코틴을 생산하였으며, 원고는 쟁점 거래처를 통하여 이를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 정부의 정보교환 회신문(을 제2호증)에 의하면, E은 담배 폐기물 수집 재활용 권한이 있고, 담배 폐기물을 이용하여 살충제, 비료, 제약물질 제조를 위한 니코틴 등을 추출·생산하는 회사이다. E은 2013년에 7,453.53t, 2014년 4,331.61t의 담배 폐기물을 구매하였는데, 거기에는 연초의 잎, 줄기, 재가 포함되어 있다. E의 니코틴 생산공정에는 담배 폐기물에서 연초의 잎을 제거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오히려 E은 담배 폐기물에서 연초의 잎을 분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니코틴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E이 1차로 생산한 니코틴 원료에는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 니코틴이 이를 공급받아 정제·가공된 것이라면 거기에도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이 담배 폐기물과 별도로 연초의 대줄기를 공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니코틴을 생산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다) ○○ 정부의 정보교환 회신문(을 제1호증)에 의하면, D은 니코틴이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았고 니코틴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받은 회사이므로, 직접 연초의 대줄기를 이용하여 쟁점 니코틴을 생산하였을 가능성은 작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D은 F유한공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니코틴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는데, F은 ○○의 담배전매국에 의하여 폐담뱃잎·줄기 처리업체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쟁점 니코틴이 F으로부터 구입한 니코틴이거나 이를 정제·가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원료에는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 ○○성 농약제품 품질감독검측소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에서



마) 원고는 D 명의의 성명서(갑 제3호증), ○○ 현지 직원과의 메신저 대화(갑 제4호증) 등을 근거로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대줄기만을 이용하여 가공·추출한 니코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성명서는 앞서 본 E에 관한 ○○ 정부의 정보교환 회신문 내용에 어긋나 믿기 어렵고, 메신저 대화 내용은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대줄기만을 이용하여 가공·추출된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초의 잎이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뒤집기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5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8

판사 김○○

판사 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8

(별지)

목 록

처분일자	과세번호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가산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합계
2022. 7. 8.	000001	46,534,800	31,596,660	20,470,650	9,805,230	108,407,340
	000002	71,554,320	47,897,740	31,476,740	14,774,860	165,703,660
	000003	150,927,240	99,670,830	66,392,890	30,566,620	347,557,580
	000004	203,038,680	132,257,350	89,316,710	40,316,660	464,929,400
	000005	138,643,560	89,021,640	60,989,300	26,962,750	315,617,250
	000006	150,757,680	95,443,170	66,318,300	28,721,790	341,240,940
	000007	157,728,480	98,294,800	69,384,750	29,362,930	354,770,960
	000008	166,583,280	102,363,750	73,279,980	30,373,810	372,600,820
	000009	154,883,640	93,873,410	68,133,310	27,668,250	344,558,610
	000010	163,003,680	97,278,960	71,705,310	28,451,940	360,439,890
	000011	174,627,960	102,592,170	76,818,830	29,766,520	383,805,480
	000012	167,449,920	96,868,100	73,661,210	27,880,030	365,859,260
	000013	150,249,000	85,565,300	66,094,530	24,421,260	326,330,090
	000014	150,230,160	84,157,430	66,086,240	23,803,600	324,277,430
	000015	161,326,920	88,873,380	70,967,710	24,901,850	346,069,860
	000016	168,825,240	91,383,400	74,268,220	25,346,310	359,823,170
	000017	167,958,600	89,453,070	73,884,980	24,573,400	355,870,050
	000018	165,377,520	86,590,010	72,749,570	23,541,030	348,258,130
	000019	150,870,220	77,704,190	66,367,800	20,908,510	315,850,720
합계		2,860,570,900	1,690,885,360	1,258,367,030	492,147,350	6,301,970,640